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이수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3조(계획서의 제출) 졸업논문 심사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 졸업실기(작품)발표 계획서, 졸업연주발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계획서를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을 거쳐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연구)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제) ① 논제는 반드시 소속 학부(과)의 전공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 논제의 선정은 전공주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소속 학부(과)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은 학기초 15일 이내에 전공을 감안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③ 학부(과)장은 위촉한 지도교수 명단을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를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연주의 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을 경우 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제출 시기) 논문은 지정된 규격 및 서식에 맞추어 10월말(후기 졸업자는 5월말)까지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및 심사)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의 전임교원이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결정 하되, 전공주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위원은 학부(과)장이 선임하여 교무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논문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고 합·부 판정은 심사위원이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부로 한다.

제9조(실기심사) ① 실기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학부(과)인 경우 학부(과)장은 주제, 장소 및 심사위원등 필요한 사항을 교학지원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기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성적 평균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심사 결과 보고) 학부(과)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졸업예정자 졸업심사결과표에 따라 11월말(또는 6월말)까지 교학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심사 결과 조치)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도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만을 수여한다.

② 논문심사가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37조에 의한 졸업을 인정 하되 그 시기는 논문제출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12조(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졸업소요 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합격된 자가 졸업 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1년간 인정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제14조(논문대치) 논문 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부(과)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5조(보관) 졸업논문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졸업종합고사) ① 졸업 종합시험의 실시 시기는 매년 10월중(후기 졸업자는 5월중)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과목은 각 학부(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5과목 이상을 출제하며 각 과목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의 채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40점 이하를 과목낙제로 하며, 성적평가는 전과목 성적의 평균치로 하고, 성적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종합시험과목 중 2과목 이하의 과목이 낙제일 경우 1회에 한하여 낙제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할 수 있으며, 3과목 이상의 과목이 낙제일 경우에는 전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하여야 한다.

⑤ 졸업 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부(과)의 학부(과)장은 졸업 종합시험 실시 후 졸업예정자 종합시험성적집계표를 작성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졸업 종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전과목을 무효로 하며, 시험 합격 후 부정 행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18조(졸업 종합시험 관리위원) ① 해당 학부(과)장은 소속학부(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졸업 종합시험 관리위원을 구성하여 교학지원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부(과)장은 매년 종합시험 시행시마다 필요한 출제위원, 채점위원, 감독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교학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